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9
----------	-----

201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회부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6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사업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한센병관리사업으로서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무 개요

- 사무명 :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 사무
- 사업대상 : 한센병 환자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서울중부지부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4-19
 - 규모 : 전용면적 100m² (법인소유)
- 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3년간)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01.01 ~ 2015.12.31)
- 위탁업무
 - 부랑 한센 병력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한센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 기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소요예산 : 71,176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 태 호)

가. 위탁사무의 분석

-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한센병 관리사무의 주요업무는 ‘부랑 한센 병력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한센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기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거나 승인하는 사업’인데, 이들 사업은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제8호, 제9호,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임.
 - 참고로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위탁사업 중 나머지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수탁받아 수행 중에 있음.
 - ‘부랑 한센 병력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한센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등은 주로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서, 한센병 환우들 중심으로 결성된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서울중부지부에서 위탁수행 중에 있음.

나. 민간위탁 지속대상 사무인지 여부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랑 한센 병력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한센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등은 단순한 홍보 및 교육사업이므로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아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또는 교육을 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가진 외부 민간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 따라서 부랑 한센 병력자 선도 등의 사무는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49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사업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한센병관리사업으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 개요

- 사무명 :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 사무
- 사업대상 : 한센병 환자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서울중부지부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4-19
 - 규모 : 전용면적 100m² (법인소유)
- 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3년간)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01.01 ~ 2015.12.31)

- 위탁업무
 - 부랑 한센 병력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한센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 기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소요예산 : 71,176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위탁사업)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89.4.1 ~ 1991.12.31(2년9개월)
 - 2차 : 1992.1.1 ~ 1994.12.31(3년)
 - 3차 : 1995.1.1 ~ 1997.12.31(3년)
 - 4차 : 1998.1.1 ~ 2000.12.31(3년)
 - 5차 : 2001.1.1 ~ 2003.12.31(3년)
 - 6차 : 2004.1.1 ~ 2006.12.31(3년)
 - 7차 : 2007.1.1 ~ 2009.12.31(3년)
 - 8차 : 2010.1.1 ~ 2012.12.31(3년)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3항에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속적으로 변하는 의료환경 및 지역사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사업수

행으로 불량인 선도사업에 관련된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위탁사업) 제2항 제8호 및 10호
 -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8.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 10.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